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중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77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허중식 · 김정호 · 염태영
김태선 · 이용우 · 이학영
김교홍 · 용혜인 · 이훈기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를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가 운반한 생활폐기물에 한정한다)

4.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29조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

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입력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값, 위치 정보, 처리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정보(이하 “생활폐기물처리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지원
 3.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4.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활동 및 홍보
 5.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기초자료 산정 및 업무 지원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한 자

제4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내용

1의3. 제1호의2에 따른 내용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18조제3항을”을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제3항을”로,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을 “생활폐기물처리정보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개정규정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1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가 운반한 생활폐기물에 한정한다)

4.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생활폐기물을 처

<신 설>

② (생 략)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료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29조제2항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⑤ (생 략)

<신 설>

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입력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

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값, 위치정보, 처리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정보(이하 “생활폐기물처리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신 설>

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지원
 3.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4.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활동 및 홍보
 5.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기초자료 산정 및 업무 지원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3. (생략)

<신설>

3. ~ 20. (생략)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1의2. (생략)

2.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기후에너지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 20. (현행과 같음)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한 자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

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생활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내용

1의3. 제1호의2에 따른 내용과

생활폐기물처리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

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6. ~ 9. (생략)
- ② ~ ⑥ (생략)
-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생활폐기물처리정보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 6. ~ 9.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68조(과태료) ① -----

1. (생 략)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 11.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4의2. (생 략)

<신 설>

<신 설>

4의3. (생 략)

5. ~ 14. (생 략)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삭 제>

1의3.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 제4항-

4.·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5.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5.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